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남궁역 의원 외 27명
- 의안번호 : 제1980호
- 발의일자 : 2024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2. 제 안 이 유

- 유아동네숲터에 자연물(통나무, 나뭇가지 등)로 유아숲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어 유아이용시 안전사고가 우려됨.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숲 체험시설은 설치기준이나 안전기준이 없으며,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유아 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함.

3. 주 요 내 용

- 가.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동네숲터¹⁾에 설치된 유아숲 체험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과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 이용 시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지난 2020년 제정²⁾되었음.
-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에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유아숲체험시설³⁾에서 유아숲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1) 제2조(정의) 6.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84호, 2020. 1. 9., 제정]

3) 제2조(정의) 7.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숲이 양호한 지역에 식물과 다양한 요소의 조화를 통해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예산 290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402개소(유아숲체험원 78개소, 유아동네숲터 324개)를 운영하고 있음.⁴⁾

4) 유아숲체험시설 조성 사업 연도별 추진실적(2024년 8월 기준)

구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소계(개소)	402	41	92	119	73	43	25	8	1	1
유아숲체험원	78	41	6	5	11	8	4	1	1	1
유아동네숲터	324	-	86	113	62	35	21	7	-	-

※유아숲체험원(5,000㎡ 이상), 유아동네숲터(5,000㎡ 미만으로 300㎡ 규모로 조성)